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요령

농림부 고시 제1996-59호
1996. 8. 2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축산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종계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 및 방역관리가 우수한 종계사육농장의 인증요령 및 등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가축전염병”, “가축방역관”, “종축업”, “종계”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우수종계장 인증대상) ①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이하 “우수종계장”이라 한다)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사육농장(이하 “종계장”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② 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종계장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충청북도는 농축산사업소장,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장,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해당농장에 대한 제5조 제1항의 전염병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대상 전염병중(추백리를 포함하여) 2종 이상의 전염병이 1년간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검사대상 전염병 중 추백리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종계장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검사신청, 검사기관 및 검사성적 회신)

① 제5조 제1항의 전염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염병검사 신청서를 종계장 관할 시험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우수종계장 인증을 위한 종계장의 전염병 검사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도는 농축산사업소, 전라남도·충청도는 축산기술연구소,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확인검사는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과학연구소가 실시한다.

③ 검사신청을 받은 시험소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검사성적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대상 전염병, 검사기준 및 방법) ① 종계장의 검사대상 전염병은 추백리, 가금티푸스 및 닭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gallisepticum*, *Mycoplasma synoviae*)로 한다.

② 제1항의 전염병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인증신청등) ① 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관할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증신청서 제출시 당해 종계장을 관할하는 시험소장이 발행한 제4조 제3항의 전염병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신청서를 받은 농림부장관은 수의과학연구소장에게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전염병검사성적서를, 축산기술연구소장에게는 당해 종계장의 우수종계확보 및 분양실적, 종계분양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술정보 제공실적, 양계업계간의 신뢰

성 등을 각각 검증토록 하여야 한다.

③ 수의과학연구소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제2항의 전염병검사성적서 및 해당 종계장의 종계관리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검증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케 할 수 있다.

④ 수의과학연구소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제2항과 제3항의 검증·확인검사결과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종계장인증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종계장인증심의위원회) ① 우수종계장 인증과 등급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 우수종계장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소속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 소속 관계 공무원 1인
2. 수의과학연구소 계역과장
3. 축산기술연구소 종계관련업무 담당과장
4. 우수종계장인증대상 종계장 관할 시도 축산(축정)과 소속 관계공무원 및 시험소장 각 1인
5. 축산·수의 관련대학 교수, 축협중앙회·대한양계협회 등 축산 관련단체와 축산농가,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 기관 및 축산수의 전문가 중 7인 이내

④ 우수종계장인증과 등급은 위원회 구성

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위원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에 필요한 세부심의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이 간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수의과학연구소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이 검증·확인검사 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인증 취소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종계장 인증 및 등급에 관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등급기준) ① 우수종계장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등급별 기준은 제5조 제1항의 검사대상 전염병의 발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등급 : 검사대상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2. 2등급 : 검사대상 전염병 중 2종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제10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내용 변경 등) ① 협회장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우수종계장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우수종계장인증표지를 교부한 후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위원회에서 우수종계장으로 인증되지 아니한 종계장 대표자에게 인증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받은 종계장의 대표자가 인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수종계장인증 변경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우수종계장인증 변경신청서를 받은 협회장은 변경신청사유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우수종계장인증서를 변경교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비용지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수종계장인증대상 종계장의 전염병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소 및 수의과학연구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우수종계장인증표지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수종계장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용징수기준을 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우수종계장 인증대상 종계장으로부터 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종계장의 준수사항) 협회장으로부터 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받은 종계장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종계장위생관리요령(농림수산부고시 제1994-12호)의 이행
2. 관할시험소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 수검 및 협조

3. 농장내 종계에 대한 질병예찰, 종계의 분양, 이동 및 도계, 예방접종, 죽은 종계에 대한 병성감정 실시사항 등의 기록을 유지하고 주요사항을 매 분기마다 관할 시험소장에게 보고

4.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규정 이행

제13조(사후관리) ① 우수종계장 관할 시험소장은 해당농장의 종계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의 검사대상전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난.

② 시험소장은 우수종계장에서 제5조 제1항의 검사대상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제1항의 검사결과 전염병발생이 확인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그 사실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우수종계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표지를 회수하거나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2항의 전염병발생(우수종계장인증서에 기재된 비발생 전염병에 한한다)

2. 제12조의 우수종계장의 준수사항 위반

제14조(인증제도 운영 세부사항) ① 이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외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받은 종계장의 홍보방법

2. 인증표지의 상품표시 사용 또는 광고허용 범위

3. 우수종계장인증표시 제작 및 부착방법

4. 기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염병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1. 임상검사

○ 가축방역관이 매분기마다 대상농장을 방문하여 검사대상질병별로 임상증상 유무를 관찰한다.

2. 정밀검사

가. 추백리 및 가금티푸스

(1) 검사주기 : 6개월

(2) 사육규모별 최소검사대상 수

① 5,000수 이상 사육종계장 :
사육마리수의 3% 이상

② 5,000수 미만 사육종계장 :
100수 이상

(3)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① "추백리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부 고시)"에 의(준)함

② 확인검사 : 혈청평판응집반응, 시험관응집반응 및 균분리를 병행하여 실시

나. 마이코플라즈마(*M. gallisepticum*,

M. synoviae)

(1) 검사주기 : 6개월

(2) 검사대상 : 120일령 이상의 계군 중 동일계군 사육수수의 1% 이상

(3)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① 1차검사 : 혈청평판응집반응

② 확인검사 : 시험관응집반응, 혈구응집억제반응(1:40 이하일 때 음성) 또는 균분리를 병행하여 실시